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6월 12일, 윤건영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: 2026년 7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38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전체회의(2026. 8. 24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

소위원회

제438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6. 8. 26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원

안가결)

제439회 국회(정기회)

제1차 행정안전위원회(2026.9.1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축조심사, 찬

반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윤건영의원)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.

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생 략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이해식)

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, 원안의결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·자구 심사를 거쳤음.

[붙임]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안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 본문 중 “광역시”를 “통합특별시·광역시”로 한다.

제31조의2제3항 본문 중 “광역시장”을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공동계약) ① (생 략)	제29조(공동계약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 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 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 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 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 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. 다 만,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 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 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)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합특별시·광역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1조의2(과징금) ① · ② (생	제31조의2(과징금) ① · ② (현

